

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. 9. 24 선고 2015가단307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피 고 C

변론 종결 2015. 8. 27.

판결 선고 2015. 9. 2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,가. 충주시 D 대 367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27㎡ 지상 조립식판넬외벽 및 양철지붕주택, 같은 도면 표시 3, 4, 5, 6, 10,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11㎡ 지상 쇠파이프골조양철지붕외벽 및 양철지붕 방앗간건물을 각 철거하고, 위 (가)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,나. 위 가.항 기재 방앗간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적산전력계 및 위 (가) 부분 토지 지상에 적재된 각종 톤백자루, 파렛트를 수거하고,다. 2014. 12. 12.부터 위 가.항 및 나.항 기재 의무이행완료일까지 월 8,8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의 가. 항 및

1. 나. 위 가.항 기재 방앗간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적산전력계 및 위 (가) 부분 토지 지상에 적재된 각종 톤백자루, 파렛트, 쓰레기 등을 수거하고,

다. 2014. 12. 12.부터 위 가. 항 및 나.항 기재 의무이행완료일까지 매월 59,230원의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들은 2014. 12. 12. 충주시 D 대 367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 중 각1/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충주시 E 대 565㎡(이하 '피고 측 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, F는 1979. 4. 10.1979. 4. 9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, 피고(F의 자녀이다)는 2002. 1.10. 1996. 12. 11.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.

다. F는 1965.경 피고 측 토지 지상에 1층 목조 함석지붕 단층공장 148.72㎡를 신축하였고, 1993.경 1층 시멘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주택 및 창고 68.16㎡, 1층 경량철골조 조립식지붕 단층주택 81㎡(이후의 증축부분 등을 모두 포함하여 '피고측 건물'이라한다)를 각 증축하였다. 그 후 피고는 2002. 1. 10.경 피고 측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,2013. 7.경 정미소 건물 등을 목구조에서 철골조로 변경하는 등 대수선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8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.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

대한지적공사 충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축탁결과, 감정인 G의 차임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.

1) 피고 측 건물 중 조립식판넬외벽 및 양철지붕주택은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 27㎡[이하 '이 사건 토지 중 (가) 부분'이라 한다] 지상에 있고, 쇠파이프골조 양철지붕외벽 및 양철지붕 방앗간건물은 같은 도면 표시 3, 4, 5, 6, 10,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11㎡ 지상에 있다.

2)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(가) 부분 27㎡ 지상에 각종 톤백자루, 파렛트를 적재하고 있다. 또한, 위 1)항 기재 방앗간건물에 적산전력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.

2) 이 사건 토지 중 (가) 부분 27㎡의 2014. 12. 12. 이후의 임료는 8,840원/월이다.나. 위 가.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들에게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1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27㎡ 지상 조립식판넬외벽 및 양철지붕주택, 같은 도면 표시 3, 4, 5, 6, 10,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11㎡ 지상 쇠파이프골조 양철지붕외벽 및 양철지붕 방앗간건물을 각 철거하고, 위 (가)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, 2위 방앗간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적산전력계 및 위 (가) 부분 토지 지상에 적재된 각종 톤백자루, 파렛트를 수거하며, 3 2014. 12. 12.부터 위 1항 및 2항 기재 의무이행완료일까지 월 8,8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[원고들의 수거청구 중 쓰레기수거 청구 부분은 그 대상이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아 인용하지 아니한다. 또한, 원고들은 월 59,2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청구하고 있으나 위 차임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(가) 부분 27㎡의 임료는 8,840원/월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].

3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가. 취득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

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(가) 부분을 20년간 점유하여 소유권 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피고는 피고 또는 피고의 피상속인인 F가 이 사건 토지 중 (가) 부분을 20년간

점유하였다거나, 스스로 피고 측 토지를 위한 통행로를 위 (가) 부분에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, 설사 피고의 피상속인인 F가 피고 측 건물을 신축한 1965.경 또는 피고 측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79. 4. 10.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(가) 부분을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위 기산점으로 부터 20년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F 또는 피고가 위 (가)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 원고들이 2014. 12. 12.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명백하므로, 피고는 원고들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(대법원 1992. 9. 25. 선고 92다21258 판결 등 참조).

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에 관한 판단

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(가) 부분이 피고 측 토지에서 공로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갑 제7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피고측 토지의 양 옆으로 공로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측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.

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.

4. 결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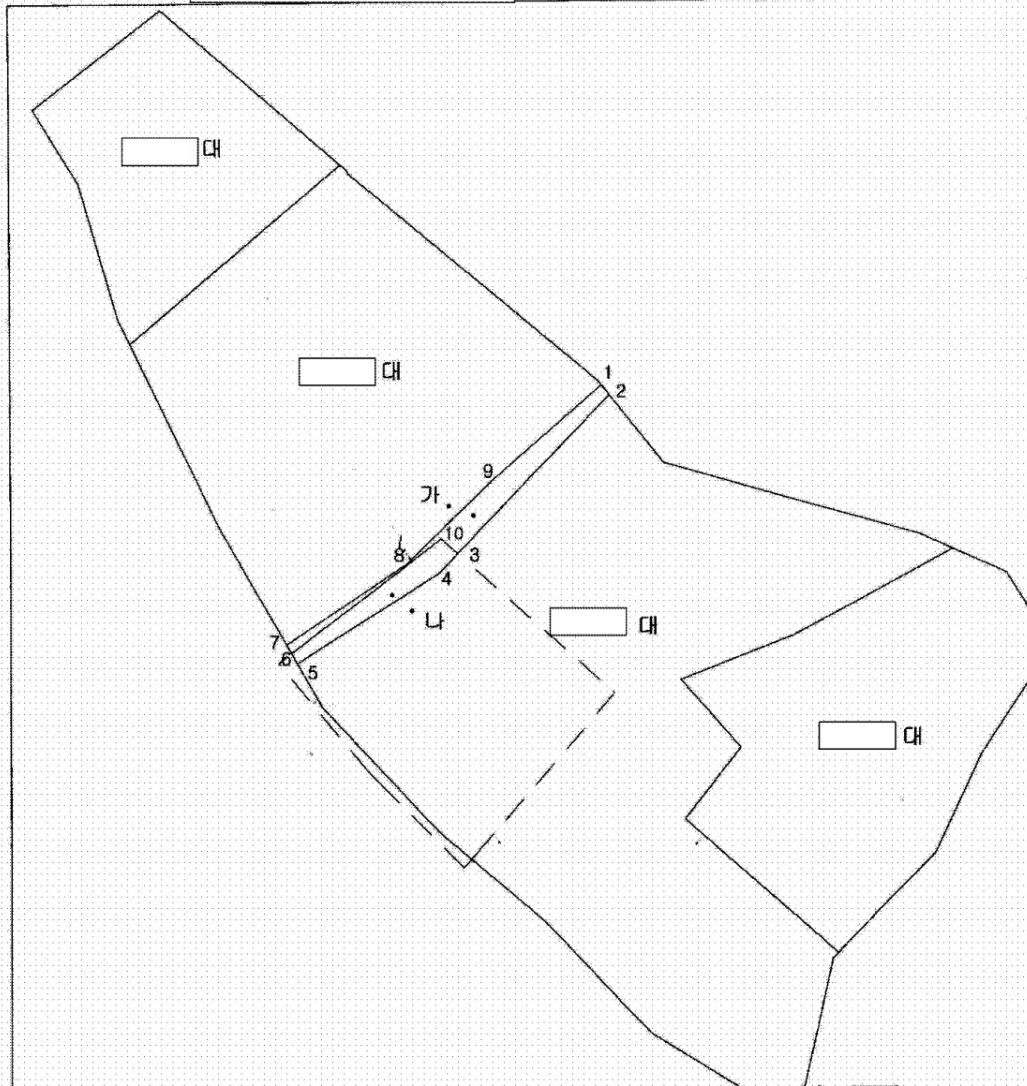
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황병호

참 고 도

충주시

축척 : 임의축척



법 례					
지번	지목	공부상면적(㎡)	부호	면적(㎡)	비 고
	대	367	가	27	1~9,1 에서 점유사용하는 부분
			나	11	3~6,10,3 철거등양철외벽및양철지붕 방앗간건물

비 고

* 공유물 분할은 법원의 확정판결(화해조서)을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시·군청에 개발행위허가(토지분할허가)를 신청하여 시·군청으로부터 관련법 저촉여부를 검토 받은 후 저촉사항이 없는 경우에만 토지(임야)분할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